

사무직원 승진 내규



한국항공대학교

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2013.4.22		16		
2			17		
3	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사무직원 승진 내규

제1조 (목적) 이 내규는 한국항공대학교(이하 '본 대학교'라 한다) 사무직원(기술직, 기능직 포함)의 승진임용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적정을 기하는 데 있다.

제2조 (승진의 적용) 직원의 승진은 제반요건이 구비된 후보자 중 정관상 정원에 결원이 있을 때 시행한다.

제3조 (승진의 시기) 승진의 시기는 연 2회로 정하되 3월과 9월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4조 (승진 소요년한) 직원의 승진은 직급별로 <별표 1>에 정한 기간 이상을 재직한 자라야 한다. 다만,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에 한하여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5조 (승진심사 및 기준) ① 승진심사는 직원 인사규정 제 16조 제 3항에 의한다.

② 직원 승진을 위한 기준은 직원근무평정세칙 제 6조 내지 제 8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시행하며, 총장은 근무평정 결과 등을 고려, 승진 임용자를 선정한다.

제6조 (승진임용의 제외)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1. 휴직 중에 있는 자
2. 직원인사규정 제22조 제4호에 의거 승진임용의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<개정 2013.4.22>
3.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본인의 능력으로 보아 상위직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

제7조 (승진임용) 주무처장은 이 내규에 따라 업무를 주관하고, 본 대학교 직원인사 규정을 적용하여 시행한다.<개정 2013.4.22>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내규는 199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2. 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3. 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13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<별표 1>

직 원 승 진 연 한

1. 일반, 기술직

구 분	최소 년한	시 행 일	비 고
9급 → 8급	4년	1995. 3. 1	
8급 → 7급	4년	"	
7급 → 6급	5년	"	
6급 → 5급	5년	"	
5급 → 4급	6년	"	
4급 → 3급	6년	"	
3급 → 2급	6년	"	

2. 기능직

구 분	최소 년한	시 행 일	비 고
10등급 → 9등급	6년	1995. 3. 1	
9등급 → 8등급	6년	"	
8등급 → 7등급	7년	"	
7등급 → 6등급	7년	"	